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6.18 - 2012.06.17
- 라. 집합투자업자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대우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우리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1.11.14	명칭	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2011.11.14	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 <u>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"이라 한다.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<u>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	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 <u>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"이라 한다.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<u>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
2011.11.14	제 16 조(투자목적)	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인 <u>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</u>	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인 <u>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의

		재간접형)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 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	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 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011.11.14	제 17 조(투자대상자 산 등)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 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 용한다. 1. <u>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 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 접형)</u>의 수익증권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 법으로 운용한다. 1. <u>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의 수익증권
2011.11.14	제 18 조(투자대상자 산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른다. 1.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 자신탁재산은 <u>템플턴 이스 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</u>의 수익증 권에 투자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투자하 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<u>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 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.
2011.11.14	<부 칙> 제 1 조 (변경계약의 시행 일)	(신설)	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2012.05.03	49 조(공시 및 보고 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 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 다. 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u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 다. 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경력</u>

2012.05.03	<부 칙> 제 1 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(신설)	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2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년	16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